

전북·전주 발전 위한 국가예산 확보 '총력'

김인태 전주 부시장, 국회 방문 전북지역 국회의원 만나 내년도 주요현안 사업 예산 반영 건의

전북과 전주 발전을 이끌기 위한 내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2024년도 주요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이번 국회 방문은 2차례의 2024년도 신규 국가예산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거쳐 발굴된 신규사업 중 중점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점 추진사업으로는 '구도심 재생으로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암고일일 도시재생사업', 지역생산-지역소비 체계 구축을 위한 '떡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동아시아 최고 역사문화도시로 성장 위한 '전주고도 지정', 전주 외곽순환도로 우아~신리 연결, 수소저장용기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위한 '극저온액체-고압기체 융합형 수소저장 원천기술 개발' 등을 담았다.

이날 김인태 부시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김성주 의원(더민당, 전주병)과 함께 한병도 의원(더민주, 익산읍),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7일 국회를 찾아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2024년도 주요현안 사업의 국가예산 반영을 건의했다.

안호영 의원(더민주, 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더민주, 정읍·고창) 등 전북지역 의원들을 차례로 만나 부처 및 국회 심의위 단계에서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적극 요청했다.

여기에 김윤덕(더민주, 전주갑), 김수홍(더민주, 익산갑), 신영대(더민주,

군산), 이용호(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 이원택 의원(더민주, 김제·부안), 정운천(국민의힘, 비례) 의원실도 찾아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인태 전주 부시장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라는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올해 더 많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 전북도와 공조, 국회와

중앙부처 등을 수시로 방문해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들을 건의할 것"이라며 "이와 사전 행정절차 완료·점검 및 대응 논리 개발 등 2024년도 국가 예산을 차질없이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 순기에 맞는 대응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아록 기자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 지원

전주시, 동절기 긴급지원대상 가구당 15만원

전주시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지난달부터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 지원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과 중환 질병·부상, 가정폭력, 자연재해 등 위기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주시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는 49억2500만 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가 각각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월 405만723원), 재산 기준 중소 도시 1억52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11만

원으로 인상된 연료비를 최근 난방비 상승을 반영해 월 4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됐다. 추가 지원 기간은 보건복지부 긴급지원 지원금액 고시 개정 시행일인 지난달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오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시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연료비 인상 내용을 포함한 긴급복지지원 제도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 홍보할 계획이다. 긴급지원 대상자는 관할 주민센터와 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위기가구가 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 가구에 동절기(1월~3월, 10월~12월) 동안 지원되며, 올해 1월부터 11만

전북환경청, 가뭄대응 하천수 조기 담수 추진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송호석)과 영산강홍수통제소(소장 김규호)는 선제적 가뭄대응의 일환으로, 동진강수계 주요 하천 하구의 수문을 닫아 하천수 조기 담수를 추진하고, 농업용수를 비축할 계획이다.

최근 지속된 가뭄으로 동진강유역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삼진강댐의 저수율이 급감(19.3%, 3월 6일 기준)하여 이양기 농업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선제적 가뭄대응을 위해 하천수를 조기 담수하고, 확보된 하천수는 농업용저수지 물재우기 및 농지 직접담

수에 총 1,111만m³이 활용될 계획이다. 담수된 하천수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영산강홍수통제소는 가뭄대응을 위한 한시적 하천수사용허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협조하기로 했다. 공사중인 고부천유역 홍수방지대책 사업 구간의 하도확장을 3월말까지 최대한 추진하여 농업용수 178만m³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장기화되는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하천수 담수현장 등을 지속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종은 기자

자립준비청년 안정적 자립 도모 위한 멘토링사업 추진

전주시, 20일까지 '사회적가족 이음 멘토링사업' 참여 멘토·멘티 모집

전주시는 오는 20일까지 전주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자립 지원 강화를 위한 '사회적가족 이음 멘토링사업'에 참여할 멘토와 멘티를 모집하고 있다.

자립준비청년은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살다가 일정 연령이 경과해 살던 곳을 떠나 자립해야 하는 청년을 의미한다.

이번 멘토링사업은 전주시 자립준

비청년을 위한 사회·정서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는 '멘토, 멘티' 각 30여 명씩 모집해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토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캠핑 등 체험형 콘텐츠와 경제교육, 심리검사·치료 지원 등 멘티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후 여러 분야로 확대 추진할 예

정이다. 멘티 참가자격은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전주시 거주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며, 멘토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심이 있고 든든한 정서적 지원군이 되어줄 따뜻한 마음이 있는 관내 봉사단체 또는 개인이다.

참가 신청은 전주시 누리집(www.jonju.go.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

성해 전자우편(ksy1355@korea.kr) 또는 전화(063-281-504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현욱 전주시 아동복지과장은 "자립을 준비하는 보호종료아동 개인의 필요에 맞는 실질적인 멘토링 사업을 추진해 자립을 돕겠다.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 등 기존 경제적 지원과 사회·정서적 지원으로 촘촘한 전주시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출연기관까지 확대

전주시 산하 출연기관의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적극 동참한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으로한 온실가스 감축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운영되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에는 전주시 출연기관은 빠져있었지만 앞으로 산하 출연기관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시 출연기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

당,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인재육성재단, 전주시 복지재단전주시사람 등 7곳도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을 목표로 하는 공공부문 탄소중립을 추진하게 됐다.

앞으로 시와 출연기관은 현행 제도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추진하

고 전 직원의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탄소중립 문화 확산을 위한 기관별 탄소중립 실천 서약과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온실가스 감축 운영사항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이행사항을 점검해 우수 추진기관에 표창 등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임종은 기자

전북선관위, 조합장선거 후보자 2명 고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3월 8일) 관련해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甲조합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 방법을 위반해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발송한 乙조합 후보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甲조합 후보자 A씨는 상대 후보자 B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선거공보에 게재해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고, 후보자 C씨는 위탁선거법에 정해지지 않은 선거운동용 인쇄물을 다수의 조합원에게 우편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1조제2항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공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66조제1호는 법에 규정된 선거운동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태 기자

